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
----------	-----

2019. 9. 2.(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연철흙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8월 22일

-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연철흙 의원)

가. 제안사유

○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15. 5.18 공포)

○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여가

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광영학)

- 이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

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음.

○ 주52시간 노동제도 정착에 따라 여가활용에 대한 도민의 욕구는 증대될 것이며 충청북도는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과 여가관련 각종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띄어쓰기나 자구를 수정함.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원안)」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24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원안)

발 의 자	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3일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원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3일

발 의 자 : 연철흙,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이옥규, 정상교  
이수완

## 1. 제정이유

-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15. 5.18 공포)
-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 9조·제10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 (안 제11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2019. 7. 26. ~ 2019. 8. 14.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여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활성화 시행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 등)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
3. 여가관련 단체 대표나 종사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도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어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약칭: 여가활성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 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24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수정안)

발 의 자	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3일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수정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3일

발 의 자 : 연철흙,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이옥규, 정상교  
이수완

## 1. 제정이유

-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15. 5.18 공포)
-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 (안 제11조).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 12조)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2019. 7. 26. ~ 2019. 8. 14.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를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조항을 붙여 쓰고, 같은 항 중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으로 조항을 붙여 쓰며, 같은 항 중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로 조항을 붙여 쓴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도민들”을 “도민”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거나”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u>도민들이</u>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 <u>충청북도민</u> ----- ----- -----.</p>
<p><b>제2조(기본이념)</b>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여 <u>도민들이</u>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p><b>제2조(기본이념)</b> ----- ----- ----- <u>충청북도민</u> ----- -----.</p>
<p><b>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b>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u>「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u></p> <p style="margin-left: 20px;"><u>「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u></p>	<p><b>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b> ① ---- ----- ----- -----.</p> <p style="margin-left: 20px;"><u>「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u></p> <p style="margin-left: 20px;"><u>「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u></p>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1조(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⑦ (생략)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1조(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 도민-----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

-----

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어 시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찾  
아내거나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  
- 필요-----  
-----.



# 관계 법령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약칭: 여가활성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

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